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 어떤 내용일까

방선영 올리비아 | 법무법인 백석 파트너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 결정)을 하였고,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을 개정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20년 10월 7일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요, 형법 개정안은 기존의 낙태죄 처벌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도 낙태가 허용되는 허용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이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형법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상담을 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상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는 태아의 ‘생명권’에 치명적임은 물론이지만,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어서 진정하고도 자유로운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도 보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임신 14주 이내에도 상담요건과 함께 결정을 숙고할 수 있는 숙려기간은 필수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형법 개정안은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의 경우에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점이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나 심각한 곤경이라는 것은 다분히 추상적인 의미인데다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고 24시간이라는 숙려기간만 지나면 위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를 법적으로 ‘추정’해주고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낙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법 개정안은 낙태에 대한 전면 허용과 다름이 없습니다.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 위험은 임신 8주 이후 2주마다 2배씩 증가한다고 하고, 임신 중기의 낙태는 분만보다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의 생명권 및 건강권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사회, 경제적 사유를 낙태 허용 사유로 일부 수용하더라도 임신 14주 이내로만 제한하고, 그 요건을 구체화, 명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은 “우리 세대가 상대적인 불편 요소를 제거하는 시류·사조(思潮)에 편승하여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훗날 우리조차 다음 세대의 불편 요소로 전락해 안락사, 고려장 등의 이름으로 제거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형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까지도 넘어서는 낙태의 사실상 전면허용이라 할 것이고, 사회·경제적 사유를 법적으로 ‘추정’해 줌으로써 낙태의 허용범위를 무한정 확대하여 여성의 건강과 생명권까지 위협할 수 있으며, 태아의 생명권과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를 생각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자유를 넓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방향으로 입법과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낙태를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낙태를 생각하지도 않도록 임신한 여성, 부부, 비혼부모, 청소년부모에 대한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호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 있었던 사진 100장

1965년 스웨덴 사진작가 레나르트 닐손이 찍은 태아사진들이 LIFE지에 실리면서 세계인은 처음으로 출생 전 아기를 눈으로 보게 되었다. 표지 사진은 임신 18주의 아기로 안타깝게도 낙태된 아기가었다. 스톡홀름 병원의 협조로 아기와 태반이 자궁에 있는 것처럼 조명으로 연출하여 촬영한 것이다. 사진 속 아기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잃었지만 사진을 본 많은 사람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아기를 출산하였다.

사진제공 :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Q&A

Q. 성경 필사를 하면 보통 창세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내용이 길고 어려워서요, 성경 필사를 처음 시작하는 신자들이 긴 호흡으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필사를 하려면 어느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우선 성경 필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지향으로 하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필사가 성경을 가깝게 접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좋은 지향과 목적으로 시작하겠지만, 나도 한 번 해봤다고 자랑하려는 의도나, 빨리 해치워야 할 과제물처럼 여기게 되는 상황이라면 끝까지 하기 어렵고 열매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면 그냥 눈으로 읽을 때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단어 하나하나, 혹은 한 구절에 주목하게 되고, 때로는 그 단어나 구절 하나를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가슴이 충만해지는 은총을 받기도 합니다.

긴 호흡으로 필사하려면 욕심부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로 필사용 책상을 마련해서 늘 펼쳐 놓고 쓰고 싶을 때 그 앞에 앉아서 쓰면 좋습니다. 보통 창세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서 끝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고, 레위기나 민수기에 가면 절망하는 경우가 더 많죠. 성경의 첫 부분부터 쓰지 않고 골라서 써도 된다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부분은 역시 복음서 중 가장 짧고 제일 먼저 쓰인 마르코 복음이 아닐까요?